

공업용수공급규칙

The regulations for the industrial Water supply

제정	1969.	6. 30.	건설부령	제 78호
제정	1972.	5. 4.	건설부령	제122호
제정	1974.	2. 21.	건설부령	제140호
제정	1976.	2. 5.	건설부령	제165호
제정	1977.	9. 30.	건설부령	제194호
제정	1978.	7. 3.	건설부령	제207호
제정	1979.	6. 20.	건설부령	제228호
제정	1979.	12. 31.	건설부령	제259호
제정	1980.	2. 1.	건설부령	제260호
제정	1981.	5. 8.	건설부령	제296호
제정	1981.	12. 21.	건설부령	제310호
제정	1985.	2. 1.	건설부령	제383호
제정	1992.	12. 15.	건설부령	제520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의 공업용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공업용수의 요금·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수구) 이 규칙에서 “용수구”라 함은 공업용수의 배수관으로 부터 공업용수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설치되는 급수관·계량기·급수용구 및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제 3 조(급수의 신청) ① 공업용수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업용수급수신청서를 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공업용수의 급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업용수의 급수신청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용수급수신청량변경신청서를 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공급신청량변경신청은 연2회(6월, 12월)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공업용수 급수신청량의 50퍼센트 이상의 변경은 연1회에 한하여 추가신청할 수 있다.

제 4 조(용수구의 설치공사) ① 용수구는 공업용수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설치 관리한다. 다만, 공업용수의 배수관과 용수구와의 연결공사는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이를 행한다.

② 용수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용수도사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급수구의 설치 기타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공업용수구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수사용량 조서
2. 공업용수구 시설개요
3. 공사시방서
4. 수리 및 구조계획서
5. 공업용수구의 평면도·단면도 및 구조도

제 5 조(준공검사)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용수구설치에 관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신청서를 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공업용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 결과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합격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6 조(급수조합) ①공업용수의 급수를 받은 자(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업용수를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나 용수구를 공동으로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며 요금의 공동납입, 용수구시설의 개선등을 위하여 급수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조합을 설립하고자하는 자는 규약,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공업용수도사업자는 급수조합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제1항의 시설이나 용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제 7 조(급수사용량) ①공업용수의 사용량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계량한다.

②삭 제

③공업용수도사업자는 계량기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급수량을 계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수신청량 또는 전월분의 급수량을 기준으로하여 급수량을 정하여야 한다.

제 8 조(계량기) ①공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계량기를 설치한 장소에 계량기의 검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은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 9 조(계량기의 고장) ①공업용수의 급수를 받는 자는 계량기에 고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당해 계량기의 성능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업용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결과 계량기의 계침량과 급수량에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급수량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능시험을 요청하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0조(사용요금의 산정 요율) ①공업용수의 사용요금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이를 월별로 산정한다.

사용요금=(기본요율×월간급수결정량)+(계량요율×월간사용량)+(초과요율×월간급수결정량을 초과한 사용량)

제11조(요금징수 및 가사금등) ①요금은 요금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매월분을 익월 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폐지나 일시급수의 경우에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요금을 기일안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액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공업용수도사업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설계도, 평면도, 배관도 및 시방서
3. 중수도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처리계통도 및 중수도처리시설의 구조물도
5. 중수도사용계획서

제12조(급수정지) 공업용수도사업자는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처분의 2일전까지 급수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요금을 기일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업용수를 사용한 때
3. 공업용 및 생활용의 원수로부터 공급받는 물을 공업용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때
4. 계량기의 기능을 저해할 행위를 할 때

제13조(계량기파손등의 신고) 공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계량기가 파손되었거나 누수 기타 급수에 지장이 있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92.12.15부터 시행한다.

